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의 평가

일시 : 2012년 6월 8일(금) 오후 14:00 ~ 16:00

장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8층 회의실

주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 부 일 정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의 평가

시간	내용	비고
2:00 ~ 2:10	등록	
2:10 ~ 2:20	개회 및 발표자 소개	양계민 연구위원
2:20 ~ 2:30	환영사	이재연 원장
2:30 ~ 3:20	발표	이환성 박사 (한국행정연구원)
3:20 ~ 4:00	질의응답	참석자 전원
4:00	폐회	양계민 연구위원

목 차

제 1 장 서 론	3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2. 연구 대상과 범위	4
3. 연구방법	6
제 2 장 문헌연구 및 분석틀	7
1.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문헌연구	7
2. 연구의 분석틀	10
제 3 장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 운영 실태 및 문제점	12
1. 정부업무평가제도상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	12
2. 현행 제도의 한계 및 시사점	18
제 4 장 주요국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 사례분석	21
1. 일본의 다부처 관련 정책평가 제도 및 사례	21
2. 캐나다의 다부처 관련 정책평가 제도 및 사례	24
3. 주요국 다부처 관련 정책평가의 특징 및 시사점	27
제 5 장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의 특성과 평가	32
1. 다문화 정책의 추진체계 및 현황	32
2.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평가의 현황과 한계	38
3.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평가에서의 고려점	41

제 6 장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지표 및 평가모형 개발	43
1.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기본 모형	43
2.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평가지표 개발	45
3.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모형 구성	49
 참 고 문 헌	 53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의 평가

이 환 성 박사

(한국행정연구원)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의 정부업무평가제도는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자체평가와 특정평가 등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정부업무평가제도상의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4항), 국무총리는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동법 제20조제1항), 대통령이 정하는 대상 부문은 각 중앙행정기관이 공통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시책으로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문,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의 주요사업으로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부문, 기관 또는 정책 등의 추진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부문, 그 밖에 특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부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14조).

2011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보면 특정평가에서는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핵심과제, 규제개혁, 국민만족도 등에 대하여 직접 평가하며, 수시 현안과제 분석에서는 다수부처 관련,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정책 등에 대해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여기서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와 관련이 있는 정부업무평가는 특정평가의 정책과제(핵심과제, 일자리 창출 과제, 서민생활 안정 과제, 녹색성장 과제 등) 평가와 수시 현안과제 분석이라 할 수 있다. 관리역량(정책관리 역량, 정책홍보, 규제개혁, 국민만족도 등) 평가는 프로그램 평가와는 연계가 적다고 볼 수 있다.

특정평가나 수시 현안과제 분석을 통한 성과중심의 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는 각 기관의 기능과 특성 및 과제의 특성에 따른 다면적인 성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평가의 정책과제 평가지표는 획일적인 평가기준을 사용하고 있어 각 기관별 기능과 특성이나 과제의

특성을 고려한 다면적인 평가에 한계가 있다. 즉, 평가대상의 선정이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공정사회, 친서민 관련 정책,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적 과제로서 일선 현장의 집행상황 점검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여 평가하는 수시 현안과제 분석은 정책목표, 추진체계, 집행의 적절성, 목표 달성도, 실질적 정책효과 등을 중심으로 분석항목 및 기준을 설정하여 연중 수시로 분석 대상과제를 선정하여 점검·분석하나 실질적으로 추진상황에 대한 현장 점검의 의미가 강하다. 즉, 각 부처의 업무나 핵심정책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틀 내에서는 범부처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평가 및 평가를 통한 정책의 개선에 한계가 있다. 특히 고용, 주택 등 개개인의 삶의 질과 연관된 정책이나 R&D, 정보화 등 다수의 유관부서가 연계되어 추진되는 정책의 경우 현 정부업무평가제도상의 기관중심의 평가는 적용상의 한계가 있으며 평가에 따른 결과 또한 각 부처의 정책개선과 얼마나 연계되는지 불투명하다.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특정평가 이외에도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개별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국무총리 산하의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는 다문화가족지원 기본계획과 각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성과관리와 문제점 도출을 위한 평가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개별 정책의 성과목표 달성정도에 대한 점검 차원에 그치고 있어 다부처가 정책과정에 포함되는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까지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등과 같이 여러 부처에 관련되며, 정책의 효과성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정책에 대한 평가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러한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의 평가모형을 통하여 해당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개선안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 대상과 범위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연구개발이나 정보화 등과 같이 재정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같이 한정된 정책 목표와 관련된다. 본 연구는 다부처 관련 업무에 대한 분석 및 효과성을 포함하여 주로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의

특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평가 방안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따라서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과 같이 다부처와 관련된 사업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내용 및 효과성에 대한 평가모형을 제시하며, 이러한 모형을 통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에 어떠한 도움이 될지도 동시에 고려하고자 한다. 실제로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의 2011년도 사업을 보더라도 국무총리실,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등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한국어 교육 및 통·번역 지원사업, 지역 일자리 연계사업 등을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채용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과 관련하여서 여성가족부는 언어영재교실 운영사업, 언어발달 지원사업 등을 교육과학기술부는 거점학교를 통한 한국어 교육·학습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는 등 다문화 관련 사업들은 다수의 부처에 의해 다양한 목표와 체계 속에서 수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사업목표와 유형, 추진체계, 정책수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될 필요가 있다.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사업 목표가 취업, 교육, 혼인 등 다양할 수 있으며 사업대상 집단의 연령이나 지역 등에 따라 평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즉,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은 사업대상, 사업수단, 사업목적, 사업내용 등에 따라 평가 내용과 방법론 등이 다를 수 있고 이러한 점이 평가에 고려되어야 다면적인 성과 파악이 가능하다.

다만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의 범위 자체가 매우 광범위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 프로그램 역시 관련 부처 및 세부사업이 매우 많으므로 이들 부처 및 세부사업을 모두 분석하기보다는 일정수의 사례를 선정하여 심층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향에서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에 관한 기존연구들을 검토하고,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한다. 그리고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 현황 및 내용을 정리·소개하면서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의 특성 및 고려사항을 파악한다. 또한 일본, 캐나다 등 주요국가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현황과 비교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추가적으로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중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할 세부 프로그램을 문헌연구 등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선정한다. 이러한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 설계방안을 제시한다. 다만,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일반모형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축적된 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에서 일반적인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 설계방안을 제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모형의 도출은 향후 보다 많은 사례연구가 축적된 후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사례의 다양한 측면을 심층연구함으로써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설계를 위해 유용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방법

문헌연구를 통해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와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제도 현황 및 평가실태에 대한 조사는 주로 문헌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정부업무평가제도상의 특정평가 및 수시 현안과제 분석의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 수행과정과 평가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자료와 보고서를 수집·분석한다.

주요국 사례연구 역시 주로 문헌조사를 통해 수행되는데 주요국의 다부처 관련 평가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일본, 캐나다 등의 사례를 선정하여 평가제도 및 운영 실태를 비교분석한다.

제 2 장

문헌연구 및 분석틀

1.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문헌연구

1)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정책평가란 하나의 프로그램이 그의 산출결과들(outcomes)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으며, 왜 그렇게 작동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측정과 분석방법을 사용하는 개별적이며 체계적인 연구이다(노화준, 2008). 이러한 정책평가의 목적은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 과정을 바람직스럽게 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책과정상의 환류기능을 제공하며, 정책담당자가 정책과정에서 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성 확보 및 정책 속에 내재된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여 이론의 구축에 기여하는 학문적 기여에 있다고 볼 수 있다(정정길 외, 2004).

그간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와 관련된 연구들은 평가 이론의 구축과 보완을 위한 이론적 차원의 연구(김준한, 1999; 송근원, 2008; 강근복, 2009; 노화준, 2010; 남궁근, 2010), 개별 정책사례에 대한 실제적 평가 연구(호진원, 2007; 오영균, 2008; 박병식, 2009; 이석민, 2010; 최영출, 2011) 및 정부정책평가제도에 관한 연구(구광모, 2003; 노화준, 2006; 공병천, 2007; 유금록, 2011)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평가이론과 관련된 연구들은 정책평가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검토하여 정책평가의 개념을 정립하거나, 정책평가의 실용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법론들을 소개하거나, 새로운 정책평가의 패러다임을 도입하는 연구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개별 정책사례에 대한 평가연구들은 특정 분야의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정책사례를 평가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존 평가모형과 지표에 대한 개선대안을 제시하거나 또는 주로 프로그램 논리모형에 기반하여 정책평가를 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평가제도에 관한 연구들은 기존 정책평가모형

또는 평가기준에 대한 타당성 등을 평가하거나,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대안을 제시하거나 정부조직의 평가역량의 구축과 향상을 위한 시사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가운데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데, 이는 최근까지의 연구경향이 정책평가의 다양한 이론 및 방법론의 소개와 실제 정책사례에의 적용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관심도 이론과 현실적인 차원에서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병식(2009)은 기존에 구축된 정책평가 모형들과는 다른 복합적·다면적인 정부사업의 평가설계에 관한 연구를 통해 다목적 사업들의 목표설정 단계에서부터 집행 및 효과 단계에까지 엄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한 평가설계로 첫째, 사업의 범위 선정, 조직 및 상황 분석, 이해관계자의 도출과 의견수렴을 통하여 사업의 합리적인 다수 목적을 추출하고, 둘째, 목적들 간의 상호관계 분석, 목표들의 전략적, 구조적 설계, 목표들 간의 가중치 설정을 통해 다수 목적을 구조화하며, 셋째, 목표들간의 자원공유, 상호 자원활용의 시너지효과를 통한 다수 목적의 집행과정을 분석한다. 개별 목적에 대한 평가설계로 개별 평가목적에 적합한 혼합적 평가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타당한 평가설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에 관한 문헌연구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보면 주로 정책의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다문화 관련 이슈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책의 성과와 관련된 연구들은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활용한 계량분석보다는 정책의 추진과정이나 현황 또는 성과와 관련된 문헌 등을 활용한 사례연구(심보선, 2007; 양문승·윤경희, 2010; 홍기원, 2009)들이 주를 이룬다. 반면 계량분석을 활용한 연구들은 분석적 계층화과정 기법(AHP)을 활용한 다문화사회 대응정책의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유용식·손호중, 2009), 담당공무원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인식조사(권승, 2009; 원숙연·박진경, 2009) 등이 있으며 이밖에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언어교육정책 등 교육정책(전은주, 2009; 박성혁·곽한영, 2009)과 관련된 연구들이 있다.

이중 정책의 추진과정이나 현황 또는 성과와 관련된 연구는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적 이슈들에 대한 식별과 이러한 이슈의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과 제도설계와 관련된 연구(홍기원, 2009), 경찰활동 관점에서 본 현 정부의 다문화 정책의 추진성과와 문제점 및 이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양문승·윤경희, 2010),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주요이슈인 이주노동자 정책의 형성과정과 현황을 분석한 연구(심보선, 2007)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실질적 조치를 통한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에 관한 계량적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한 중앙정부 및 지방의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원숙연·박진경, 2009; 권승, 2009) 또는 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분석적 계층화 기법을 활용한 연구(유용식·손호중, 2009)만 존재한다. 이러한 계량적 연구의 부족은 다문화라는 정책적 이슈의 특성상 계량적 지표를 설정하거나 성과와 관련된 계량적 성과지표의 부족과 다문화 사회라는 정책적 이슈의 특수성이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인식조사 결과, 다문화 사회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들의 인식은 비교적 관대한 시각으로 전환되어 왔으나 아직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정책적 이해의 부족과 잔존하는 저항은 여전히 사회적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다문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정책으로서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언어교육과 관련해서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시행중인 다양한 언어교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정책대상과 정책목표의 명확한 식별, 담당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연구개발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전은주, 2009). 다문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정책적 측면에서 외국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박성혁·곽한영, 2009) 또한 정책목표에 대한 명확한 식별과 전달기구 마련 및 법·제도적 정비 그리고 나아가 언어 관련 교육정책 일변도에서 벗어나 사회경제적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강화를 요청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 관련 연구들은 다문화 사회에 따른 문제의 해결에 대해 공통적으로 국가의 적극적 해결을 주문한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및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사회적 차별, 범죄, 언어교육 등에 있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선도하고 관료와 국민의 의식변화가 수반될 때 효과적으로 다문화 사회에 정착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며 이들에 대해서도 단지 노동가치 창출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대하는 현재의 일반적 인식은 교육과 홍보 등에 의한 국가의 정책적 수단을 통해서 상당 부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3) 선행연구 검토의 시사점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지금까지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가 진행하는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의 이론적인 논거는 정책평가이론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평가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의 틀을 구성하고자 한다. 특히 박병식(2009)은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평가설계를 사업의 전체적인 측면과 개별적인 측면으로 분류하여 단계별 평가활동을 시론적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개별사례에 대한 평가연구들을 보면 대부분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 논리모형(program logic model)은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성과를 달성하는 과정에 존재하는 논리적 흐름과 연계들(linkages)을 나타낸다. 프로그램 논리모형에 의한 정책평가의 구상은 프로그램들이 의도한 수혜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노력이 된다(오영균, 2008). 따라서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적용을 통해 각 프로그램은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원인을 분석할 수 있게 되며 궁극적으로 평가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기존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들은 해당 정책의 일부 사례에 대한 집행과정의 문제점 도출이나 대안의 제시에 그치고 있어, 정부정책평가의 거시적 관점에서 이러한 개별사례 평가를 아우를 수 있는 평가모형과 지표 등의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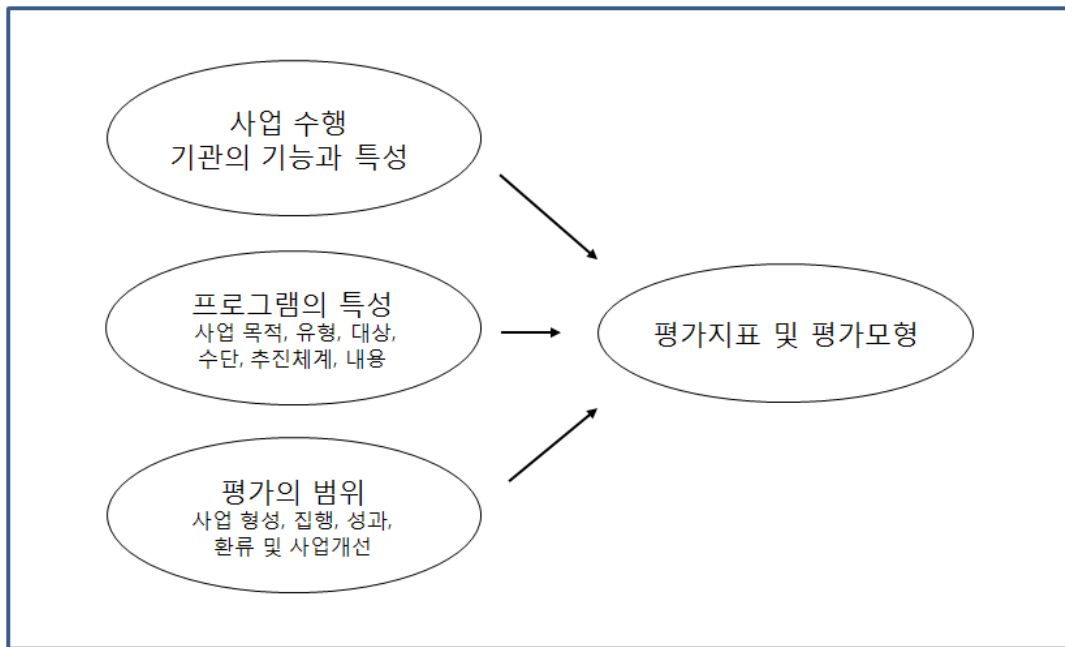
특히, 정부의 정책영역이 다양화되고 대상범위가 광범위해지면서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구축된 정책평가모형들이 복합적, 다면적인 정부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정책의 다양한 목적들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런 실태에 맞는 다면적·복합적 평가설계 모형을 새롭게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박병식(2009)의 지적은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수행 기관의 기능과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의 평가지표와 평가모형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다른 차이가 있다.

2. 연구의 분석틀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지표 및 평가모형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는 크게 사업 수행기관의 기능과 특성,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의 특성,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의 범위를

주요 변수로 고려하고자 한다.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의 특성으로는 사업목적, 사업유형, 사업대상, 사업수단, 사업추진체계, 사업내용 등을 하위변수로 고려할 수 있으며,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의 범위에서는 사업 형성 평가, 집행성과 평가, 사업 효과성 평가, 환류 및 사업개선 평가 등을 하위변수로 고려할 수 있다.

<그림 2-1> 연구의 분석틀



제 3 장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 운영 실태 및 문제점

1. 정부업무평가제도상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이며, 기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해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부업무평가 제도 하에서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는 특정평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체평가와 특정평가 이외에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수시 현안과제 분석’을 통해 다수부처 관련,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정책에 대해 평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특정평가의 평가대상 중 다부처 관련 정책평가 계획과 수시 현안과제 분석의 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특정평가제도 개요

특정평가는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특정평가 분야로 선정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 대상기관의 업무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차별화된 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평가 총괄기관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보완하여 평가의 통합 및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1) 평가부문

2011년도는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추가하여 총 8개 부문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추진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표 3-1> 중앙행정기관의 추진성과를 위한 8개 평가부문

- ① 핵심과제
 - 부처별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성과목표 중 국정과제, 기관별 ' 11년 업무계획에서 제시된 주요 정책과제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국정기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과제를 평가대상으로 선정
 - 다만,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녹색성장 과제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과제 선정
 - 선정된 핵심과제의 정책형성·집행·성과 등 정책과정 전반을 점검·평가하고, 정책만족도 조사결과를 평가에 반영
- ② 일자리 창출 과제
 - 부처별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성과목표 중 일자리 창출 관련 과제의 추진노력 및 성과를 정책단계별로 평가
 - 상반기에는 과제별 추진 상황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며(7월), 하반기에는 종합적으로 평가 시행
 - 수요자 중심의 정책추진을 위해 정책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
- ③ 서민생활 안정 과제
 - 부처별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성과목표 중 서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정책형성-집행-성과 등 정책단계별로 평가
 - 수요자 중심의 정책추진을 위해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
- ④ 녹색성장 과제
 -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중앙부처 추진계획의 추진성과 등을 평가
 -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성과 및 효과성에 중점을 두어 평가
- ⑤ 정책관리 역량
 - 각 기관의 정책현안 이슈관리, 조정·통합, 집행관리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 및 성과 도출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평가
 - 기존의 입법 관리 등 일부 부처에만 해당되는 평가는 제외*하고, 국정기조에 따른 정책추진 역량 등에 대한 평가를 신설·추가
 - * 갈등관리, 위기관리, 법령준비 신속성, 주요법안 처리 등 평가제외
 -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나눔과 배려*」 관련, 행정관리 효율화 노력 등에 대한 평가 추가
 - * 장애인 고용, 장애인 생상품 구매, 중소기업 제품 구매 등
- ⑥ 규제개혁
 - 각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노력·이행실적, 규제개혁의 효과 및 고객만족도 등을 평가
- ⑦ 정책홍보
 - ' 11년 국정운영기조와 연계한 홍보기획 및 부처간 협조노력, 뉴미디어 홍보활동 등을 평가
- ⑧ 국민(정책·민원) 만족도
 - 각 부처의 주요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국민 및 전문가가 직접 평가
 - 각 부처의 민원행정서비스(일반·인터넷 민원) 만족도를 민원인이 직접 평가
 - * 국민만족도 조사는 원칙적으로 연 1회 실시

(2) 평가방법

평가는 개별 부처가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에 등록한 추진실적 자료를 토대로 평가하

되, 필요시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이를 위해 각 평가부문별로 평가의 전문성·객관성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는 별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연중 평가 모니터링을 활성화한다. 또한 부문별로 소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정책과제(핵심과제,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녹색성장 과제)는 대상과제가 한 부처 내에서 2개 이상일 경우 과제의 범위·중요도·난이도 등 과제별 가중치를 고려하여 평가하며, 분야별 평가 시에도 정책과제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한다. 정책관리역량·규제개혁·정책홍보 등은 부문별로 특화된 지표를 적용하여 평가하며, 국민만족도는 민간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조사한다. 특히 정책만족도는 일반국민·전문가 모집단에서 무작위 추출하여 설문조사 방법으로 시행하며, 민원만족도는 조사대상 기간 중 민원접수대장상의 민원인 모집단에서 무작위 추출하여 설문조사한다. 평가결과는 부문별로 그룹핑을 통해 기관별 등급(최우수·우수·보통·미흡)을 도출하도록 한다.

(3) 평가시기

상반기에는 2011년 업무계획 전체 과제를 대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7월)하여 하반기 종합평가에 반영하며, 하반기에는 핵심과제, 정책관리역량, 국민만족도 등 8개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4) 평가결과 활용

특정평가 결과는 평가보고회 개최 또는 국무회의에 보고(12월)하며,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고, 유용한 평가정보를 생산·제공 및 차기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는 등 정책개선에 활용(12월)한다. 수범사례는 타 기관에 확산·전파하고 미흡사례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조치 또는 역량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2) 특정평가제도상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

2011년 특정평가는 핵심과제, 일자리 창출 과제, 서민생활 안정 과제, 녹색성장 과제, 정책관리 역량, 정책홍보, 규제개혁 및 국민(정책·민원)만족도 등 총 8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¹⁾. 이

1) 이하 내용은 국무총리실(2011)의 2011년 특정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참조하였다.

가운데 ‘일자리 창출’ , ‘서민생활 안정’ 및 ‘녹색성장’ 과제는 다수 부처가 해당 정책과제의 하위정책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다부처 관련 정책으로 볼 수 있다.

(1) 일자리 창출 과제 평가

일자리 창출 과제 평가는 일자리 대책의 추진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정책추진 동력을 강화하고, 개선·보완책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실시된다. 평가는 부 9개, 청 2개 등 총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표 3-2> 일자리 창출 과제 평가대상기관

구 분	기 관 명
장관급 기관 (9)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차관급 기관 (2)	산림청, 중소기업청

11개 기관의 총 45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이는 기관별 2011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관리과제 중 예산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일자리 창출 관련 관리과제이다. 일자리 창출 과제의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3-3> 일자리 창출 과제 평가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정책형성 (20)	1. 정책목표의 적절성(15)	1-1. 일자리창출 목표와의 부합 연계성(5) 1-2. 정책목표 설정의 적극성(10)
	2. 정책추진 기반의 확보(5)	2-1. 자원 확보 및 배분의 적절성(5)
정책집행 (25)	3. 추진과정의 적절성(20)	3-1. 추진계획의 진척도(15) 3-2. 유관기관 · 정책과의 협조 노력(5)
	4.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성(5)	4-1. 모니터링 및 대국민 소통 홍보 노력(5)
정책성과 (45)	5. 목표달성도 (25)	5-1. 성과목표치의 달성도(25)
	6. 정책효과 (20)	6-1. 일자리 창출에의 파급효과 기여도(20)
정책만족도 (10)		7-1. 일자리대책 정책만족도(10)

(2) 서민생활 안정 과제

2011년도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기조인 서민생활안정 구현을 위한 친서민 정책과제에 대한 추진노력, 성과 및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함으로써,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서민층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등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평가의 목적이다. 서민생활 안정 정책과 밀접한 13개 부와 1개 청(중소기업청)을 대상으로 한다.

<표 3-4> 서민생활 안정 과제 평가대상기관

구 분	기 관 명
장관급 기관 (13)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물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차관급 기관 (1)	중소기업청

2011년도 연두업무계획 및 기관별 성과관리시행계획에서 국가적 역점과제, 서민생활과 직접 관련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서민층이 공감하는 실천과제로 선정하였다. 평가과제는 14개 기관별 각 2개씩 총 28개 과제(4대 분야: 서민경제, 보건·복지, 교육, 문화)를 대상으로 한다. 서민생활 안정 과제의 평가지표 다음과 같다.

<표 3-5> 서민생활 안정 과제 평가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정책형성 (15)	1. 계획수립의 충실성	1-1. 상위 정책목표(서민생활 안정)와의 부합성(5)
		1-2. 정책내용의 타당성 및 계획의 체계성(10)
정책집행 (25)	2. 추진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준수성(5)
		2-2. 유관 기관·정책과의 협조 노력(5)
		2-3. 정책여건 및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성(10)
		2-4. 대국민 소통·홍보노력(5)
정책성과 (45)	3. 성과달성 및 효과성	3-1. 목표의 달성도(20)
		3-2. 정책의 효과성(25)
정책만족도(15)		4-1. 서민생활안정 과제 설문조사 결과(15)

(3) 녹색성장 과제

녹색성장 비전선포('08.8.15.)이후 4년차에 접어드는 2011년을 맞아, 국민들의 녹색성장 정책 체감도 고취 및 녹색생활 실천을 확산할 필요가 있으며,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성과 및 정책 체감도에 대해 내실 있게 평가함으로써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한다. 녹색성장 과제의 평가기관은 부 단위 15개, 청 단위 9개 등 총 24개 기관이며, 기관의 특성 및 과제 성격을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분류한다.

<표 3-6> 녹색성장 과제 평가대상기관

구 분	기 관 명
장관급 기관 (15)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차관급 기관 (9)	조달청,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방위사업청, 통계청

부 단위 기관은 원칙적으로 1개 과제를 대상으로 하되, 업무특성에 따라 2개까지 가능하며, 청단위 기관은 1개 과제를 평가하여, 총 28개 과제를 대상으로 한다. 녹색성장 과제의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3-7> 녹색성장 과제 평가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계획 (20)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정책목표의 명료성 (5)
		1-2. 정책내용의 타당성 (5)
		1-3.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절성 (10)
추진 (30)	2. 추진과정의 적절성	2-1. 추진과정의 효율성 (5)
		2-2. 추진일정 준수 정도 (10)
		2-3. 추진 과정상 협조노력 (10)
산출/결과 (50)	3. 정책소통 확산노력	3-1. 정책소통 교육홍보 노력 (5)
		4-1. 성과목표 달성도 (30)
		4-2. 정책 효과성 (20)

3) 수시 현안과제 분석

(1) 분석대상

국정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정책, 다수부처가 관련된 정책 중 선제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정책을 대상과제로 선정한다. 또한 공정사회, 친서민 관련 정책 및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적 과제로서 일선 현장의 집행상황 점검이 필요한 과제를 우선 선정한다.

(2) 분석항목

정책목표, 추진체계, 집행의 적절성, 목표 달성도, 실질적 정책효과 등을 중심으로 분석항목 및 기준을 설정하여 분석한다.

(3) 분석방법

정부업무평가위원, 전문가 등으로 점검분석팀을 구성하고 총리실내 관련 부서간 상시협의체를 구성하여 과제선정, 중점 점검사항, 점검결과를 협의하도록 하며, 현장점검을 통해 현실성, 실효성 있는 개선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4) 분석시기

현안과제 분석은 연중 수시로 대상과제를 선정하여 점검 분석한다.

(5) 분석결과 활용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조정회의, 국무회의 등을 통해 확정하고, 주기적인 이행실태 점검 등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2. 현행 제도의 한계 및 시사점

1)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의 한계

2011년 정부업무평가제도 하에서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로 볼 수 있는 것은 특정평가의 정책과제 중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녹색성장 과제 평가와 수시 현안과제 분석이다. 다만, 이중 본 연구와 직접 연관에 있는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는 특정평가의 정책과제 평가이며 현행 특정평가를 통한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한계가 있다.

우선 특정평가의 정책과제 평가지표는 정책과제별로 획일적인 기준을 사용하고 있어, 각 부처가 추진하는 하위과제의 특성은 물론 기관별 기능이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에 한계가 있다. 둘째, 공정사회, 친서민 관련 정책 및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적 과제로서 일선 현장의 집행상황 점검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여 평가하는 수시 현안과제 분석은 정책집행에 대한 현장 점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책과정 전반에 걸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셋째, 각 부처의 업무나 핵심정책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현행 정부업무평가의 제도는 정책중심 평가라기 보다는 기관중심 평가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범부처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평가 및 평가를 통한 정책 개선에 한계가 있다. 즉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의 평가 결과가 특정한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관의 평가결과로서만 사용되는 한계가 있다.

결국 다수의 부처가 연계되어 추진되는 정책의 평가는 평가지표의 획일성 및 기관중심 평가 제도로 인해 효과적인 평가에 한계가 있으며, 평가결과 또한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및 각 부처의 정책 개선과 얼마나 연계되는지 불투명하다.

정부업무평가제도 이외의 다부처 관련 과제의 평가 유형으로,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 및 주관부처가 수립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등의 추진 결과를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그러나 동 위원회는 명목상 중앙부처 사업을 총괄·조정하고 있으나 정책집행의 측면에서 실질적인 권한 및 역할이 미흡하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평가제도와 달리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규정에 따라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대한 성과평가가 심도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간단한 정책평가 결과는 2010년 시행계획 상의 정책을 포괄하지 못하며 평가결과도 간단한 개요 수준에서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전년도 성과지표 달성 정도에 대한 점검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이며 정책평가의 기본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2)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시사점

부처 간 연계의 필요성은 공공부문 정책환경의 변화에서 기인한다. 빈곤, 환경, 가족문제, 약물중독, 폭력 등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증가, 다양한 욕구를 가진 국민과 이들의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 정보기술의 발달 등의 영향으로 다부처 관련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정책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공공부문의 비용 증가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는 비효율적이고 서비스 품질이 낮으며,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단기정책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UNPAN, 2002; 이혜승·김난영, 2011에서 재인용).

주요 선진국들은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핵심요인을 연계와 협력으로 정의하고 이를 점진하고 있다. 주요 국가의 최고 감사기구들은 이러한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통합적인 관점의 제공, 장기적 난제의 해결, 비용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 전달체계의 개선, 혁신의 촉진 등(영국 감사원: NAO), 공동의 성과목표 정의, 목표달성을 위한 공동전략 수립, 적극적인 자원조달계획 수립, 리더십을 포함한 역할과 책임 등(미국 감사원: GAO), 관련기관의 명확한 목표 공유, 정책 프로세스의 관리, 충분한 자원확보 및 적절한 배분, 참여자를 아우르는 리더십 등(호주 감사원: ANAO)을 제시하고 있다(이혜승·김난영, 2011).

따라서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의 평가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목적 달성과 효과성 제고를 중점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평가 형태의 획일화된 사업평가에서 벗어나 관련 프로그램의 다양한 사업목표와 사업유형, 추진체계 및 정책수단의 특징을 반영하는 평가가 요구된다. 즉,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은 사업대상, 사업수단, 사업목적, 사업내용 등에 따라 적절한 평가내용과 방법론이 적용되어야 다면적인 성과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제 4 장

주요국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 사례분석

1. 일본의 다부처 관련 정책평가 제도 및 사례

1) 다부처 관련 정책평가 제도

총무성은 2개 이상의 행정 기관에 공통되는 각각의 정책에 대해 정부 전체로서 통일성을 확보하는 견지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2개 이상의 행정 기관의 업무에 관계되는 정책에 대해 종합적인 추진을 도모하는 견지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 통일성 및 종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를 행한다(정책평가법 제12조 제1항; 장교식, 2008).

총무성 행정평가국은 복수 부처에 걸친 정책평가를,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에 대해 정부 전체의 정책 통일성 또는 전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일성 확보 평가 또는 종합성 확보 평가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통일성 확보평가는 여러 부처에 공통되는 각각의 정책으로서 그 정부 전체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하는 평가이며, 종합성 확보 평가는 여러 소장(所掌)에 관련된 정책으로서 그 종합적인 추진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 종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되는 평가이다(http://www.soumu.go.jp/main_sosiki/hyouka/seisaku_n/toutitusei.html, 검색일 2011.7.19.).

2) 다부처 관련 정책평가 사례

2011년 현재까지 수행된 다부처 관련 정책평가는 총 20개에 달하며, 각 평가대상 정책은 다음과 같다.

<표 4-1> 총무성에 의해 수행된 다부처 관련 정책평가 목록

년도	평가대상 정책
2011	바이오 매스의 활용에 관한 정책 평가 (バイオマスの利活用に関する政策評価)
2009	세계 최고의 “저공해차” 사회의 구축에 관한 정책 평가 (世界最先端の「低公害車」社会の構築に関する政策評価)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방지 등에 관한 정책 평가 (配偶者からの暴力の防止等に関する政策評価)
	외국인이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에 관한 정책 평가 (外国人が快適に観光できる環境の整備に関する政策評価)
2008	자연 재생 추진에 관한 정책 평가 (自然再生の推進に関する政策評価)
	PFI 사업에 관한 정책 평가 (PFI事業に関する政策評価)
2007	재활용 대책에 관한 정책 평가 (リサイクル対策に関する政策評価)
	소년 비행 대책에 관한 정책 평가서 (少年の非行対策に関する政策評価書)
2006	대도시 지역의 대기 환경 보전에 관한 정책 평가서 (大都市地域における大気環境の保全に関する政策評価書)
2005	유학생 수용 추진 시책에 관한 정책 평가서 (留学生の受入れ推進施策に関する政策評価書)
2004	호수의 수질 환경의 보전에 관한 정책 평가서 (湖沼の水環境の保全に関する政策評価書)
	저출산 대책에 관한 정책 평가서-새로운 엔젤 플랜을 대상으로 (少子化対策に関する政策評価書-新エンゼルプランを対象として)
	검사 검정 제도에 대한 정책 평가 보고서 (検査検定制度に関する政策評価書)
	(경제 협력(정부 개발 원조)에 대한 정책 평가 보고서 (経済協力(政府開発援助)に関する政策評価書)
2003	특별 회계 제도의 활용 상황에 대한 정책 평가 보고서 (特別会計制度の活用状況に関する政策評価書-歳入歳出決算における表示内容を中心として)
	정부 금융 기관 등에 의한 공적 자금의 공급에 관한 정책 평가서 (政府金融機関等による公的資金の供給に関する政策評価書)
	장애인의 취업 등에 관한 정책 평가서 (障害者の就業等に関する政策評価書)
	리조트 지역의 개발 정비에 관한 정책 평가서 (リゾート地域の開発・整備に関する政策評価書)
	용기 포장 재활용 촉진에 관한 정책 평가서 (容器包装リサイクルの促進に関する政策評価書)
	지역 수입 촉진에 관한 정책 평가서 (地域輸入促進に関する政策評価書)

* 자료: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http://www.soumu.go.jp/main_sosiki/hyouka/seisaku_n/toutusei.html, 검색일 2011. 7.19.)

최근 실시된 다부처 관련 정책평가인 ‘바이오 매스의 활용에 관한 정책평가’ 및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방지 등에 관한 정책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부처 관련 정책평가의 내용과 특징을 알 수 있다.

(1) 바이오 매스 활용에 관한 정책평가 사례

총무성 행정평가국은 ‘바이오 매스 일본 종합 전략(이하, 종합전략)’ 및 이에 기반한 바이오 매스 활용에 관한 정책이 총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등에 대해 정책평가를 실시하였다²⁾³⁾. 동 종합전략은 지구의 온난화를 방지하고, 순환형 사회를 형성하며, 경쟁력 있는 새로운 전략산업을 육성하며, 농림·어업의 활성화 효과를 지향하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 종합전략에 따라 바이오 매스 활용 시설의 설치 수 증가 등 바이오 매스를 활용하기 위한 환경이 정비되고 있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① 정책 전체 비용(결산 금액), ② 바이오 매스 관련 사업의 효과(성과), ③ 바이오 매스 타운 구상의 진행, ④ 바이오 매스의 활용 현장(바이오 매스 관련 시설)의 CO₂ 삭감 효과 등 정책의 효과와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한 데이터가 지금까지 충분히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총무성은 2011년 2월 15일 관계 6성(총무성,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업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에 평가결과 및 개선사항을 권고하였다.

(2)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방지 등에 관한 정책평가 사례

총무성은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31호, 2001년, 이하, 법)’에 따른 정책이 총체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올리고 있는지 등에 관해 2009년 정책평가를 실시하였다⁴⁾. 동 법 제정 이후 정책평가 시점까지는 다양한 정책에 의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체제 정비가 진행되어, 피해자의 상담 건수와 피해자의 일시 보호 건수가 증가하는 등 일정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조사결과 시정촌이 접수한 피해자의 상담 건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등 정책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기본 지표의 문제점, 피해자

2) 해당 정책사례는 總務省(2011b)의 バイオマスの利活用に関する政策評価 評価結果及び勧告, 報道資料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3) 바이오 매스란 재생 가능한 생물 유래의 유기 자원, 식품 폐기물(음식물 쓰레기 등), 가축 배설물, 임지 잔재, 볏짚 등을 말한다.

4) 해당 정책사례는 總務省(2009)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보호와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취업 촉진, 주택 확보, 자녀의 취학 등의 각종 지원 조치의 문제점, 관계 기관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연락 협의회의 구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총무성은 2009년 5월 26일 관계 7개 기관(내각부, 국가공안위원회·경찰청, 총무성, 법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국토교통성)에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권고하였다.

2. 캐나다의 다부처 관련 정책평가 제도 및 사례

1) 다부처 관련 정책평가 제도

캐나다의 경우 다부처 관련 정책에 대한 특정의 평가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수 부처와 관계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부처별 성과보고서(Departmental Performance Reports: DPRs) 상에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성과를 내야 하는 부처 간 이니셔티브(Horizontal Initiatives)라는 항목을 별도로 편제하여 특별히 평가와 성과관리를 하고 있다.

2) 다부처 관련 정책평가 사례

2009-2010 회계연도의 성과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는 부처 간 이니셔티브(Horizontal Initiatives)는 해당 정책을 중심으로 이에 포함된 25개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이니셔티브의 지출, 계획, 성과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1) 환경부(Environment Canada)의 부처 간 이니셔티브 사례

2009-2010 회계연도의 환경부(Environment Canada)의 부처 간 이니셔티브는 총 5개이며, 각 이니셔티브 명은 다음과 같다⁵⁾.

- 지구관측 캐나다 그룹(Canadian Group on Earth Observations)
- 멸종위기종 관리법(Implementation of the Species at Risk Act)

5) 해당 사례는 캐나다 재무위원회 사무처 홈페이지의 2009-2010 DPRs - Horizontal Initiatives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http://www.tbs-sct.gc.ca/dpr-rmr/2009-2010/info/hi-ih-eng.asp#icp>).

- 5대호 유역 생태계 이니셔티브(Great Lakes Basin Ecosystem Initiative)
- 연방 오염지역 사업 계획(The Federal Contaminated Sites Action Plan)
- 청정공기 아젠다(Clean Air Agenda)

이 가운데, 청정공기 아젠다(Clean Air Agenda)에 대한 부처 간 이니셔티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관부처: 환경부(Environment Canada)
- 파트너: 9개 기관

천연자원개발부(Natural Resources Canada), 교통부(Transport Canada), 보건부(Health Canada),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원주민·북미행정부(Indian and Northern Affairs Canada), 공중위생국(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국립연구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 of Canada), 산업부(Industry Canada), 인적자원개발부(Human Resources and Skills Development Canada)

- 정책 집행 기간: 2007.4.1. ~ 2011.3.31.
- 정책 개요

청정공기 아젠다(Clean Air Agenda: 이하 CAA)를 통해서, 캐나다 정부는 기후 변화와 대기오염이라는 도전과제에 본격적으로 착수함으로써 캐나다 환경의 가시적인 개선을 향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2007년부터 시작된 CAA는 첫째, 산업, 교통, 소비자 부문 및 상업 부문에 있어서의 규제적 이니셔티브, 둘째,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실내 공기 질 개선, 기후 변화로 인한 충격의 경감, 국제적 수준에서의 참여 등을 위해 고안된 일련의 보완적 프로그램 조치들과 같은 주요 정책내용을 가지고 집행 중에 있다. CAA는 다부처 간 수평적인 관리, 책임 및 보고 체제(framework)를 통하여 관리된다. 이 체제는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CAA 프로그래밍 시의 재정적·비재정적 성과에 관한 보고를 촉진한다. CAA 결과의 진전 사항은 2007년부터 이와 같은 수평적 체제를 통해 공개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 공유 산출결과

CAA의 45개 프로그램은 청정 공기 규제 의제, 청정 에너지, 청정 운송체제, 실내 공기의 질, 국제적 조치, 순응 및 파트너십 그리고 관리와 책임 등의 8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공유되는 결과로는, 첫째, 캐나다인을 위한 보건, 경제, 환경적 이득이 실현되는 것, 둘째,

대기 오염에 노출된 결과로 초래되는 캐나다인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험이 감소하는 것, 셋째, 기후변화로 인해 초래되는 지역사회, 기반시설 및 캐나다인의 보건과 안전에 대한 위험이 감소하는 것이다.

(2) 건설부(Infrastructure Canada)의 부처 간 이니셔티브 사례

2009-2010 회계연도의 건설부(Infrastructure Canada)의 부처 간 이니셔티브는 총 5개이며, 각 이니셔티브 명은 다음과 같다⁶⁾.

- 전략적 사회기반구축 펀드(Canada Strategic Infrastructure Fund; CSIF)
- 국경 기반구축 펀드(Border Infrastructure Fund; BIF)
- 지방 기반구축 펀드(Municipal Rural Infrastructure Fund; MRIF)
- 캐나다 기반구축 프로그램(Infrastructure Canada Program; ICP)
- 캐나다 건설 펀드(Building Canada Fund; BCF)

이 중 캐나다 기반구축 프로그램(Infrastructure Canada Program)에 대한 부처 간 이니셔티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관부처: 건설부(Infrastructure Canada)
- 파트너: 5개 기관

대서양 개발처(Atlantic Canada Opportunities Agency), 퀘벡 경제개발부(Canada Economic Development for Quebec Regions), 경제분산부(Western Economic Diversification Canada), 남온타리오 연방경제개발처(Federal Economic Development Agency for Southern Ontario), 캐나다 북부 개발처(Canadian Northern Development Agency)

- 정책 집행 기간: 2000. ~ 2010.
- 정책 개요

캐나다 기반구축 프로그램(The Infrastructure Canada Program, 이하, ICP)은 지방 자치지역의 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2000년에 도입된 프로그램이다. 캐나다 정부는 각 지방 정부의 기반시설

6) 해당 사례는 캐나다 재무위원회 사무처 홈페이지의 2009-2010 DPRs - Horizontal Initiatives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http://www.tbs-sct.gc.ca/dpr-rmr/2009-2010/info/hi-ih-eng.asp#icp>).

프로젝트 비용의 3분의 1까지 제공하고 나머지는 주·준주 정부가 부담한다. 동 프로그램은 2010-2011년도까지 유효한 20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이다. 기금은 원활히 집행 중이고 프로젝트 역시 캐나다 전역에 걸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자금 조달의 대부분은 승인된 프로젝트에 사용되어졌다.

이 기금 집행의 최우선 순위는 ‘녹색 지방 프로젝트(green municipal projects)’ 인데, 즉 환경의 질적 측면을 강화시키는 환경적 혜택 혹은 인간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건측면의 혜택을 수반한 프로젝트들이다. 다른 우선순위들은 적당한 가격의 주택, 문화, 관광 및 휴양 오락, 근교와 원거리 지역의 통신, 공공 기관 및 공공 교통시설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등을 포함한다. 개별 지역 공동체가 그들의 필요를 가장 잘 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본 프로그램은 지방 자치구역의 유연성과 캐나다 원주민(First Nations)이 그들의 기반시설 우선순위를 직접 알아보게 하는 유연성을 가진 상향식 접근법 하에서 운용된다. 이는 또한 도시와 지방의 지역 공동체 사이의 공평한 균형을 확립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 공유 산출결과

전반적으로 계획된 결과에 따라 캐나다 도시와 근교의 지방 기반시설이 강화되었고, 캐나다인의 삶의 질이 환경을 보호하고 장기적인 지역 공동체와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투자를 통해서 개선되었다.

3. 주요국 다부처 관련 정책평가의 특징 및 시사점

주요국들은 1990년대 후반 공공정책에서의 연계를 적극 추진하였는데, 이는 공공부문의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의 전통적 문제 해결방법이 한계를 드러내고 이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감사연구원, 2010). 연계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정부 내부와 외부의 다양한 기관들이 조직 및 업무의 경계를 넘어서 함께 일하는 것(NAO, 2001; 감사연구원, 2010에서 재인용)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공동활동(joint working), 협력(collaboration), 다수부처 사업(interdepartmental, interagency, cross-cutting) 등 다양하게 불린다. 특히 연계는 공식적 관계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관계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며, 계획수립 → 집행 → 평가 등 정책의 매 단계에서 가능하다(감사연구원, 2010).

이처럼 다수 부처 및 행정기관 간 정책 연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관점에서, 이에 대한 일본과 캐나다의 평가 사례의 특징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일본의 다부처 관련 정책평가의 특징

일본의 총무성은 정책평가법 제12조에 따라, 전 정부적 입장에서 각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정책에 관하여 입체적인 평가가 필요한 경우와 복수의 행정기관과 관계가 있는 정책으로 그 종합적인 추진의 모색을 위해 평가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화하는 사회·경제정세 속에 각 행정기관의 정책평가와 관련하여 객관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으로부터 평가에 대한 요청이 있어 행정기관과 공동으로 평가를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행정기관의 정책에 관하여 정책평가의 객관성과 엄격한 실시를 위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총무성 행정평가국은 이러한 다부처 관련 정책평가를 통일성 확보 평가 또는 종합성 확보 평가로 정의하고, 다부처 관련 정책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책평가를 실시하며, 2011년 현재까지 수행된 다부처 관련 정책평가는 총 20개이다. 이 가운데 2011년 실시된 ‘바이오 매스의 활용에 관한 정책평가’와 2009년 실시된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방지 등에 관한 정책평가’의 평가내용에 따른 다부처 관련 정책평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수의 부·성이 관계된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평가가 실시된다. 부·성의 자체평가는 해당 부·성의 소관사무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하고 있는 상위 정책의 효과성을 파악할 수 없다. 총무성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러한 정책의 최종 효과성을 검증하고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평가를 하고 있다.

둘째, 평가를 위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사용한다. 각 부·성이 제출한 자료 이외에도, 현지조사, 서면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총체적인 효과성의 측정 및 문제점의 진단을 위해 노력한다.

셋째, 관련 부·성에 대해 문제점의 시정을 권고하거나 지시한다. 평가결과 나타난 다양한 지적사항 들을 공표하고, 해당 부·성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등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지시하여 평가결과의 실질적인 환류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러한 특징을 종합해 보면, 일본의 다부처 관련 정책평가는 각 부·성 소관 시책 및 프로그램 평가를 통한 기관평가가 아니라, 특정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평가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해당 정책과정에서 집행평가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평가결과의 환류가 가능하여 평가대상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2) 캐나다의 다부처 관련 정책평가의 특징

캐나다의 경우 다부처 관련 정책에 대한 특정한 평가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수 부처와 관계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각 부처의 성과보고서(DPRs) 상에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성과를 내야 하는 부처 간 이니셔티브(Horizontal Initiatives)라는 항목을 별도로 편제하여 특별히 평가와 성과관리를 하고 있다.

2009-2010 회계연도의 성과보고서(DPRs)에 기술되어 있는 부처 간 이니셔티브(Horizontal Initiatives) 가운데, ‘청정공기 아젠다(Clean Air Agenda)’와 ‘캐나다 기반구축 프로그램(Infrastructure Canada Program)’의 내용에 따른 다부처 관련 정책평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캐나다의 다부처 관련 정책평가는 평가의 의미보다는 성과관리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하위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결과를 산출하기 보다는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의 예산, 지출, 계획, 성과 등에 관한 정보를 기술하고 있다.

둘째, 캐나다의 정책평가 및 성과관리는 각 부처의 자체평가를 근간으로 한다. 부처 간 이니셔티브의 관리 역시 해당 정책의 주관부처가 관련부처 및 기관의 프로그램 및 계획과 성과 등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셋째, 정책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한 부처 간 이니셔티브의 정보는 성과달성을 위한 점검의 의미와 함께, 일부 차기 회계연도의 예산배정과 관련됨으로써, 부처 간 이니셔티브에 대한 평가작업에 중요성을 주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종합해 보면, 캐나다의 다부처 관련 정책평가는 해당 정책에 대한 회계연도별 성과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평가주체가 해당 정책의 주관부처이므로 자체평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주관부처가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성과를 조사·분석하면서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는 장점이 있다.

3) 주요국 사례의 시사점

일본의 다부처 관련 정책평가는 총무성이 직접 특정 정책집행에 관련된 각 부·성 및 행정기관의

시책과 프로그램을 평가하므로, 실제 집행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상위평가로 볼 수 있다. 반면 캐나다의 다부처 관련 정책평가는 부처 간 이니셔티브의 주관 부처가 수행하므로 자체평가의 형태에 가깝다.

정책평가의 내용을 보면, 일본의 다부처 관련 정책평가는 해당 정책의 집행평가의 성격이 강한 반면, 캐나다의 다부처 관련 정책평가는 해당 정책의 특정 회계연도에 대한 성과평가의 측면이 강하다.

정책평가 결과의 활용에서, 일본의 다부처 관련 정책평가는 평가결과가 해당 부·성 및 행정기관에 대한 권고, 지시사항 등을 통해 즉각적으로 환류되는 반면, 캐나다의 다부처 관련 정책평가는 일부의 경우 차기 회계연도 예산과 연결은 되지만, 평가보다는 성과관리라는 측면에서 평가결과의 환류가 활성화되지는 않는다.

일본의 다부처 관련 정책평가는 우리나라의 특정평가와 유사한 점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특정평가가 해당 부처 소관의 정책에 대한 평가에 집중하여 상위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점점의 여지가 부족한 반면, 일본의 다부처 관련 정책평가는 평가대상 정책 그 자체의 효과성에 집중하고 있는 면에서, 범정부 차원의 주요 현안 및 거시정책의 평가에 보다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캐나다의 다부처 관련 정책평가는 우리나라의 자체평가와 유사하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각 부처의 자체평가에 정책 관련 타 부처 및 기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다. 즉 우리나라의 평가제도에서는 상위정책에 포함되는 부처별 하위정책 간 효과적인 연계에 대해 정책집행 부서인 부처 수준에서의 고려는 거의 없다.

결국 일본의 총무성을 통한 상위평가와 캐나다의 주관 부처를 통한 자체평가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는 있으나 해당 정책의 효과적인 결과 산출이라는 평가의 목적은 동일하다. 따라서 한국의 정부업무평가제도 가운데 수시 현안과제 분석과 유사한 일본의 사례는 물론 우리와 다소 상이한 캐나다 사례 모두는 나름의 시사점이 있다. 즉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 일본과 같이 기관평가가 아닌 정책 자체의 평가에 집중하거나, 평가를 통해 정책과정에 즉각적인 환류가 가능한 평가설계를 고려할 수도 있으며, 캐나다와 같이 다부처 관련 정책의 주관 부서를 통한 정책평가 또는 성과관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해당 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해외 사례를 감안하여 효율적인 다부처 관련 정책의 평가모형을 구축하되 각 정책 및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는 적실성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표 4-2> 한국과 일본, 캐나다의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제도 비교

	한국	일본	캐나다
평가 방식	특정평가, 수시현안과제 분석	통일성 확보 평가, 종합성 확보 평가	Horizontal Initiatives
평가 유형	상위평가	상위평가	자체평가
평가 주체	국무총리실	총무성	정책주관 부처
평가 대상	다부처 관련 정책 중 일부	다부처 관련 정책 중 일부	다부처 관련 정책 대부분
평가 방법	평가지표에 의한 외부전문가 평가	관련부처 현장조사, 서면조사, 만족도 조사 등 사안에 따라 다름	정책 주관부처가 관련자료 취합
평가 결과	프로그램 성과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	해당정책의 평가지표 설정, 비용 및 효과의 공표, 정책효과 검증 실시 권고 등 사안에 따라 다름	전체 예산, 집행 예산 현황, 관련 부처별 거버넌스 구조, 공유된 산출결과 등
결과 환류	기관 포상 및 차년도 업무에 반영	정책집행의 개선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

제 5 장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의 특성과 평가

1. 다문화 정책의 추진체계 및 현황

다문화(multiculture)라는 것은 기존의 단일문화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써 동일한 혈통과 문화를 추구하는 단일문화에 다른 문화들이 통합되어 하나의 사회 안에 각기 다른 집단들이 형성해 낸 문화가 혼재된 상태를 의미한다. 즉 상이한 국적, 체류자격, 다른 인종, 다른 문화적 배경, 성별이나 연령, 계층적인 귀속감 등과 관련없이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가치를 향유하는 것을 말한다(Kymlicka, 1995; 김태원 외, 2011에서 재인용). 따라서 다문화 정책이란 이러한 다문화의 개념에 근거하여 전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의 거시적 정책기조는 과거 ‘차별적 배제(differential exclusionary)’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 규제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사회통합·동화(assimilationism)’ 또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정책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소수자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⁷⁾.

이러한 다문화 정책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법률 제10374호, 2010.7.23. 일부개정)과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9932호, 2010.1.18. 타법개정)에 따라 전자는 법무부 및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후자는 여성가족부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의한 다문화 정책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재한외

7) 외국인정책위원회(2008)는 사회통합정책이란 우리사회의 구성원이 된 외국인(이민자)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등을 다루는 정책(개인적 관점) 또는 이들의 사회부적응으로 인한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사회적 관점)이라고 정의하여, 다문화정책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여 사회통합정책으로 대체하여 개념화하고 있다(박진경, 2010).

8) 이외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실 소속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도 있다. 2003년에 설치된 동 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및 외국인 송출국가의 지정 및 해지 등의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업무와 다소간 연관은 있으나, 본 연구의 목적인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보다는 고용과 연계된 외국인 인력계획의 성격이 크므로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국민이 우리나라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나라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우리나라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한다⁹⁾. 반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 정책은 재한외국인 중 특별히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 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다¹⁰⁾.

다문화정책의 주관부처 및 정책추진체계로서, 법무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두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두고 있다¹¹⁾.

다문화 관련 정책은 추진체계에 따라 외국인 정책과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정책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정책

2011년도 우리나라의 외국인 정책은 총 7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분야별 추진계획을 설정하고 있다¹²⁾.

첫째, ‘국가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친환경 조성’ 으로 ① 저출산·고령화 사회 극복과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우수 외국인재를 유치할 수

9)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일부개정 2010.7.23., 법률 제10374호)의 제1조(목적)에 따르면 동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0) 다문화가족지원법(일부개정 2011.4.4., 법률 제1054호)의 제1조(목적)에 따르면 동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1) 다문화 사회에 대비해 다문화 정책 추진체계의 개편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임정빈·최웅선(2011)에 따르면 다문화 정책 조정체계는 외국인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고, 실무부처도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으로 나뉘어 있어 체계적이고 통일된 정책수립과 집행 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실 소속의 다문화통합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12) 외국인정책 개요는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08-2012의 2011년도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② 우수 외국인의 국내 유입 촉진을 위해 교통·주거·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전반적인 체류환경을 개선한다.

둘째, ‘외국인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내실 있는 사회통합 추진’ 을 위해 ① 이민자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우리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회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② 일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지양하고 이민자가 책임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셋째,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를 위해, ① 건전한 국제결혼 환경조성과 자립 가능한 결혼이민자 유입 유도를 위해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② 가정폭력 등 위기 결혼 이민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서비스를 강화한다.

넷째, ‘중소기업 등에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적정 공급’ 을 위해, ① 산업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농·축산업 등에 외국인근로자의 적정 공급을 도모하고, ②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중 만기도래자의 불법체류 전락 방지 등을 통한 사회·경제질서의 안정을 도모한다.

다섯째, ‘동포사회와 고국이 상호발전하는 동포정책 추진’ 을 위해, ① 동포들의 지식과 경험을 국가발전에 활용하기 위해 적정범위에서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② 동포의 국내 체류환경 개선 및 사회적응을 지원한다.

여섯째, ‘안전한 국경관리와 엄정한 체류관리’ 를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지문수집 전면 시행을 통한 국익위해자 입국 차단 및 지속적인 불법체류 단속으로 체류질서를 확립한다.

일곱째, ‘국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인식개선 제고’ 를 위해, ① 외국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 증진 및 인식개선을 위한 공익광고·방송프로그램 등 다양한 다문화 이해 콘텐츠를 보급하고, ②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건강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다문화 교육인력 양성 및 학교순회 다문화 이해교육을 추진한다.

이러한 추진방향에 따라, 외국인정책과 관련된 10개 중앙행정기관은 2011년에 4대 분야 총 16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10년 173개 사업과 비교하여 사업 수는 8개 감소하였으나, 총 예산은 약 1,800억원으로 2010년 총 1,100억원에 비해 약 58% 가량 증가하였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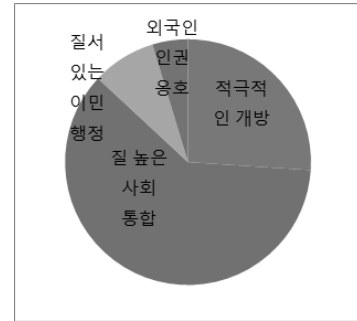
예산 비율로는 질 높은 사회통합 정책이 전체 예산의 약 61%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적극적인 개방 정책이 약 26%로 나타났다.

13)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관련 정책은 2011년 총 858개 사업에 예산은 약 1,500억원 규모이다. 이는 2010년 사업수 734개, 예산 1,800억원 대비 사업수는 17% 증가한 반면 예산은 16% 감소한 것이다.

<표 5-1> 중앙부처 정책분야별 사업규모 현황(외국인 정책)

(단위: 개, 억원)

기본계획	2011년	
	사업수	예산
적극적인 개방	46	456
질 높은 사회통합	75	1,066
질서있는 이민행정	28	147
외국인 인권옹호	16	82
합계	165	1,751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외국인 정책 사업현황은 <표 5-2>과 같다.

<표 5-2> 2011년 외국인 정책의 정책분야별 주요사업 현황

사업 분야	주관부처	주요사업 내용
적극적인 개방	교육과학기술부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사업, 해외 유수의 외국교육기관 유치 확대
	법무부	간접투자이민제도 개선, 우수인재에 대한 특별귀화 제도 도입, 전문인력에 대한 온라인비자 발급 확대(Hunet Korea)
	지식경제부	Contact Korea를 통한 우수인재 발굴 및 유치 활성화
	보건복지부	경제자유구역 등에 외국의료기관 유치, 의료코디네이터 양성 등을 통한 진료 편의 제공 및 의료관광 활성화
	고용노동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외국인력 도입(불법체류율 반영), 외국인력 고용 절차 간소화 및 안정적 고용여건 강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의 우수 해외전문인력 발굴·도입 비용 지원
질 높은 사회통합	교육과학기술부	취학 전 유아의 기본학습능력 발달 교육 지원, 기초 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대상 및 교육기관 확대, 건전한 국제 결혼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시행, 재외동포의 안정적 국내 정착 지원
	행정안전부	결혼여성이민자 지도자양성 교육, 지자체 담당공무원 전문성 제고, 결혼이민자 정보화 교육, 다문화가족 화상 상봉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가족 밀집지역 작은 도서관 조성, 다문화가정 자녀어울림 생활체육 활동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여성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맞춤형 영농교육 지속추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 보호를 받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적용범위 확대, 부모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다문화아동보육료 지원 확대, 외국인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사업 분야	주관부처	주요사업 내용
	고용노동부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여성가족부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지원/아동양육 지원서비스 확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확대
질서있는 이민행정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의 유학생 관리 체계 강화
	법무부	외국인 지문정보 등을 활용한 국경 및 체류관리 강화, 국적 취득시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관리 및 불법 고용주 처벌강화, 허위초청 불법알선에 대한 단속·조사 강화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집거지 생활환경 개선
외국인 인권옹호	법무부	범죄피해 이주여성 지원체제 구축, 난민인정 결정권한의 지방 사무소위임 및 난민지원시설 설립 등 선진적 난민 인정·지원시스템 구축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등 피해 외국여성 보호·지원

2)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

2011년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 시행계획은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생애주기를 4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지원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¹⁴⁾.

첫째, ‘결혼준비 단계’에서는 ① 결혼중개 및 입국에 대한 검증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 ② 국제결혼이민관 파견 등 주요상대국과 협력을 강화한다.

둘째, ‘가족형성 및 역량 강화’ 단계에서는 ① 방문교육 서비스, 다국어 상담 등 생활적응 지원을 강화하고, ②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한다.

셋째, ‘자녀양육 교육’ 단계에서는 ① 언어발달 지원 등 자녀 학습·양육 지원을 확대하고, ② 중도입국 자녀의 실태 파악 및 초기적응 지원을 강화한다.

넷째, ‘전’ 단계에서는 ① 범부처 총괄·조정 강화 및 지역단위 계획 수립·조정, ② 접근성 증진을 위한 센터 확대 및 내실화, ③ 다문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등 사회적 이해 제고와 함께, ④ 민·관 협력 활성화 등 나눔 문화를 확산한다.

이러한 추진방향에 따라, 다문화 가족 정책과 관련된 11개 중앙행정기관은 2011년에 5대 영역, 20개 중점과제 및 61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¹⁵⁾. 2011년 예산 비율로는 다문화가족

14)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의 2011년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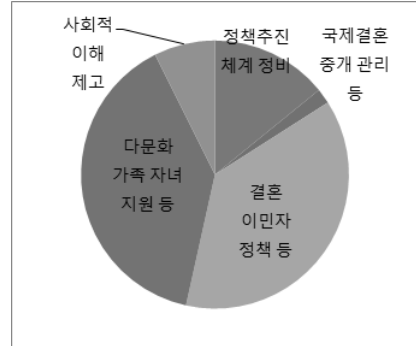
15) 교육과학기술부(11), 법무부(11), 행정안전부(12), 문화체육관광부(7), 농림수산식품부(2), 보건복지부(2), 고용노동부(6), 경찰청(1), 공정거래위원회(1), 여성가족부(34) 및 국무총리실(3)

자녀의 건강한 생활지원(39%) 및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38%) 정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5-3> 중앙부처 정책분야별 사업규모 현황(다문화 가족 지원정책)

(단위: 개, 억원)

기본계획	2011년	
	사업수	예산
정책추진체계 정비	9	126
국제결혼중개 관리 등	10	16
결혼이민자 정책 등	21	334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등	12	348
사회적 이해 제고	9	66
합계	61	890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 사업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4> 2011년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의 정책분야별 주요사업 현황

사업 분야	주관부처	주요사업 내용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국무총리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운영,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종합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전담기구 설치 표준안 마련·지자체 시달, ’ 11년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실시
국제결혼 중개 관리 및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	여성가족부	국제결혼중개 제도 개선, 국제결혼이민관 파견 등 주요 상대국과의 협력, 현지사전교육 내실화 및 대상국가 확대
	법무부 외교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ICRM) 등을 활용한 사증발급 관리,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 이수제 도입, 체류자격 변경허가 기준 강화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여성가족부	한국어교육 및 통·번역 지원, 지역일자리 연계, 포털 ‘다누리’ , ‘방 문상담서비스’ 등 정보제공·상담지원 확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보급
	고용노동부	‘취업지원프로그램’ 시범운영 및 고용촉진지원금 연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육성

사업 분야	주관부처	주요사업 내용
	보건복지부	결혼이민자 아동복지교사 채용 및 진료코디네이터 양성, 기초생활보장 범위 확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채용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다문화가족 농촌정책 지원 및 농업인력 양성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여성가족부	언어영재교실 운영,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 등 언어발달 지원,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 및 자녀생활지원 시범 제공, 중도·동반입국 자녀 초기적응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학기술부	거점학교를 통한 한국어교육·학습 지원, 유치원비 지원, 부적응자녀를 위한 대안학교 설립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어 방문학습자료 및 동화구연 콘텐츠 개발·보급
	보건복지부	보육료 지원, 아동 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제공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여성가족부	다문화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표준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담당공무원 및 청소년전문가 교육, 다문화강사 풀 운영, 나눔문화 확산 및 매체홍보
	교육과학기술부	교·사대 다문화강좌 개설, 교사 연수 및 다문화교육 포털 구축·운영
	법무부	제4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다문화 전문강사 양성, 다문화유지컬 순회공연
	행정안전부	공무원 다문화이해교육

2.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평가의 현황과 한계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각 연도별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및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성과와 정책성과 등에 대해 간략히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성과지표에 대한 성과달성 등의 점검 등 추진실적 기술에 그치고 있으며 전년도 추진실적의 성과나 문제점의 제시 또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기술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분야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평가를 통한 전략의 수정이나 집행과정의 문제점 도출과 같은 효율적인 환류과정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표 5-5> 다문화 정책 평가의 예

[2011년도 외국인정책 중앙부처 시행계획의 2010년 추진경과 및 평가 예]

1. 성과

- 국제결혼중개 제도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 결혼당사자간 신상정보 서면제공 의무화, 결혼사증 발급 심사기준 강화 등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 국제결혼 예정 한국인 대상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도입 및 결혼이민자 대상 입국적 사전 오리엔테이션 강화

2. 한계

- 대량·속성화된 상업적인 국제결혼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지속
 - 불법·탈법 중개행위에 의한 속성결혼, 위장결혼, 가정폭력 등에 의한 인권침해 및 혼인파탈 사례 지속적 발생
 - 베트남 출신 국제결혼 이민여성의 사망사건 등 불건전한 국제결혼으로 인한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2011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시행계획의 2010년 정책성과 및 평가 예]

1. 정책성과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양육·교육 지원 강화
 - 다문화교육 거점학교 60개교 지정, 한국어교육·교과학습지도 지원 및 대학생과 다문화가정 자녀를 연결한 멘토링 사업(3,700여명 수혜) 등 실시
 - 자녀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부모-자녀간 소통 증진을 위해 이중언어교실 운영(여성가족부, 52개 센터) 및 이중언어강사 양성(교과부, 116명)
 - 한국어지도사(1,489명), 아동양육지도사(1,330명), 다문화언어지도사(101명) 등을 활용한 한국어 지도, 언어발달지원(총 6,938명 수혜) 등 자녀 언어능력 향상 지원
 - 중도·동반입국 청소년 조기적응을 위한 사회입문 프로그램(경기 수원·안산, 3회, 3개월과정, 50명), 취학전 예비과정(3개소) 및 학교내 특별학급(5개교) 등 지원사업 시범 운영

2. 문제점 및 한계

- 결혼이민자의 초기적응 및 미취학자녀 양육지원을 위한 서비스는 대폭 확대되었으나, 취학자녀, 중도·동반입국 청소년 등 증가와 다문화가족 해체문제 등 정책환경의 복잡·다변화에 따른 대책 강화 필요
 - * '09년 국제결혼부부 이혼은 9.4%로(전체 이혼 10쌍 중 1쌍) '05년(3.3%)의 2.8배로 증가

또한 각 시행계획에 근거한 평가와는 별개로 정부업무평가 중 부처별 자체평가를 통해 해당 부처가 추진하는 다문화 정책의 일부 프로그램이 평가되기도 한다.

부처별 자체평가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시행계획 상 관리과제를 대상으로 하며, 관리과제 단위의 각 부처별 자체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성과목표 단위로도 자체평가

를 할 수 있다. 각 부처는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등을 활용하여 성과목표 단위로 정책효과 등을 분석·평가하여 기관의 성과창출을 위한 전략 수립 등에 활용하도록 한다. 자체평가의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은 각 부처가 기관 및 업무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지표별 배점 및 측정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평가지표는 가급적 각 부처의 특성에 맞게 개발·활용하되, 평가지표별 세부 측정방법 수립시 참고할 수 있는 예시를 국무총리실에서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국무총리실, 2011c).

2010년도 여성가족부 자체평가의 주요정책과제 28개 중에는 이주여성 폭력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글로벌 코리아를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 등 다문화 정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체평가를 통해 성과달성 및 정책효과 등을 분석하여 기관의 성과창출을 위한 전략 수립 등에 활용되었다. 법무부의 2010년 자체평가 대상 중 78개 주요정책과제에는 정주외국인 사회정착 지원, 효율적인 외국인 정책 추진 등 다문화 정책 관련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자체평가 대상 중 98개 주요정책과제에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시행했던 다문화 정책을 평가한 각 부의 자체평가 지표 및 배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는 기관평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해당 부처가 추진하는 주요과제 전체에 동일한 평가지표가 적용된다.

<표 5-6> 2010년 여성가족부 주요정책과제 평가지표 현황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성과달성도 (30점)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20
	성과지표의 적절성	10
계획 수립의 적절성 (20점)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10
	정책분석의 적절성	10
시행과정의 적절성 (40점)	추진일정의 충실성	10
	행정여건·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성	20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10
정책효과성 (10점)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10

<표 5-7> 2010년 법무부 주요정책과제 평가지표 현황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계획수립의 적절성 (10)	계획수립 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10
시행과정의 적절성 (20)	추진일정의 충실성	10
	행정여건·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성	5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5
성과달성도 (40)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25
	성과지표의 적절성	15
정책효과성 (25)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15
	정책성과 분석을 통한 개선방향 제시(정책분석)	10
평가역량 제고 노력도 (5)	자체평가 수행노력	5

3.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평가에서의 고려점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우수 해외인재의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세계화·국가간 소득격차·FTA 체결 확산 등으로 국제 인구이동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각국들은 이러한 이민자 유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와 사회갈등 방지를 위한 사회통합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2011년 9월 현재 국내체류외국인은 1,418,149명(불법체류외국인 170,614명 포함)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1년 566,835명에 비해 약 세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2011년 9월 현재 전체 체류외국인 중 외국인 노동자는 600,138명이고 결혼이민자는 143,253명으로 조사되었으며(법무부, 2011), 전국의 초·중·고교에 다니는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2010년 4월 현재 30,04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외국인정책위원회, 2011). 이러한 외국인 구성원의 지속적인 증가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으로 구성된 서구 국가에 비해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았던 우리나라도 이른바 다문화적 도전(multicultural challenge)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원숙연 외, 2009).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 관련 정책은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목표에

따라 각 부처의 고유한 정책영역별로 하위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된 정책목표 없이 이원·삼원화된 정책 조정·추진체계 내에서 다양한 정책분야별로 하위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즉 외국인(이민) 정책과 다문화 가족 정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법제도가 수립되거나 두 영역간의 일관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이 유기적인 연계 속에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다문화 관련 정책의 평가는 이러한 정책결정 단계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별적 배제(differential exclusionary), 동화(assimilationism),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와 같은 정책적 대응 방향 중 하나를 궁극적 목표로 할 수 없으며, 외국인 정책과 다문화 가족 정책 추진체계가 상정한 각각의 미션과 비전을 바탕으로 한 개별적인 평가설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국가’와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이라는 각각의 비전과 목표, 이에 따른 세부과제 등에서는 상당부분 정책내용이나 정책대상 집단의 중첩이 나타난다. 이는 거시적인 정책목표 상 외국인정책 내에 다문화 가족 정책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인데, 다문화 가족 정책 자체가 외국인정책의 네 가지 정책목표 중 하나인 ‘질 높은 사회통합’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평가설계는 이원화된 추진체계별로 비전과 미션이 상이할지라도 실제 정책의 내용이나 대상이 중첩되고, 하위정책을 집행하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각각의 추진체계별로 수립한 정책에 대한 정책평가 과정에서는 이러한 구분의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성격에 따른 평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다문화 관련 정책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명확하고 정량적인 평가기준의 마련이 어렵다. 다문화 현상은 평면적·단선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책문제의 해결에 있어 정부의 정책은 복잡한 차원을 고려하여야 하며, 정책대상이 외국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광범위하고,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양상 및 심화 정도에 따라 도입되는 프로그램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시간성의 차원이 존재한다(홍기원, 2009).

결국 다문화 관련 정책의 평가는 외국인 정책과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의 비전을 정책목표로 하되 정책내용과 정책대상의 중첩을 감안하여 하위정책을 유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하위정책을 추진하는 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별 특성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내용의 유형화와 집행체계의 특성에 따른 적실한 정책성과의 평가지표 마련이 필요하다.

제 6 장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지표 및 평가모형 개발

1.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기본 모형

본 장에서는 주로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의 평가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에 대한 평가의 기준으로서 평가지표는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결과중심 평가지표와 전체적인 정책과정 모두를 포함하는 과정중심 평가지표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물론 논리적으로 어떠한 정책의 운영에 대하여 그 결과와 과정을 명확하게 기술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정책의 주된 목표가 가시적인 산출 내지 성과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경우와 최종 성과와 밀접하게 관련된 중간단계의 정책결과와 유기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로 크게 구별할 수 있다.

어떠한 정책은 가시적인 평가지표를 통하여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중장기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어떤 정책의 경우 일정수준 이상의 목표치 개선은 어려운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현재 중앙부처 단위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년도 중심의 평가제도는 이러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시기의 조정의 한계를 고려하여 주로 가시적인 평가지표에 의존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인 평가지표는 정책결과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해당 정책의 성격에 따라서 지표의 목표 또한 달라지며,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지표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 또한 다양하게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평가와 관련된 이론이나 실무들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된 민간부문에서는 각종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와 관련하여 다양한 평가기법들과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법과 기준을 직접 적용한 다양한 사례들이 축적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책의 시행결과로 나타날 효과성에 대한 평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정부정책은 프로그램 단위에서 평가 및 효과성에 대하여 논의되었다. 즉 이러한 기준에서 가장 크게 논의된 부분은 평가지표는 단순히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판단기준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기보다는 평가지표를 통하여 현재 정책 현황과 미흡한 점 및 향후 정책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평가지표는 평가를 위하여 사용되는 세부기준을 의미하며 정책과정 전반에서 이루어진 활동에 대한 평가로서, 정책수립 및 집행의 사전적 단계에서부터 집행과정에 대한 평가와 정책이 가져온 효과에 대한 평가까지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정부업무평가제도 내의 특정평가 역시 이러한 정책의 전체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평가영역이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지표 역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정책과정을 반영한 평가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의 평가제도로써 외국인정책위원회와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의 추진성과 관리 역시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제도에서 평가지표는 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이나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해당 정책의 전체적인 측면을 고려한 정책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정책과정을 고려한 평가의 특징을 나타낸다. 그러나 정책결과를 평가하는 평가요소는 해당 정책이나 사업의 목표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수 있으며 정책의 과정적인 특징은 정책형성-집행-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해서 해당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정부지원사업과 같이 정책의 목표나 이해관계자, 과정 등이 여러 부처와 과정을 지나면서 변화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정책의 결과나 과정을 중심으로 각 정책이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평가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해당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보다는 현재 정책의 상황과 문제점, 개선점 등을 고려하여 얼마나 해당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며, 더욱이 단일기준에 의해 전체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평가지표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다.

□ 정책결과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우

- 해당 정책이 의도하는 효과성은 무엇인가? 이러한 점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평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난 부분은 무엇인가? 객관적인 성과인가? 정책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인가?
- 정책의 간접적인 효과 및 한계는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을 예측하고 있었는가?

□ 정책과정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우

- 정책추진을 위한 투입과 산출의 수준은 어떠한가? 이를 통하여 정책과정에서의 효율성이 달라졌는가?
- 정책의 투입 또는 산출에서 달라진 부분은 무엇인가? 해당정책의 수요 및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정책변화인가?
- 해당 정책을 통하여 기존과 어떠한 부분이 달라졌으며, 이를 통하여 정책의 다양성과 반응성 등 이해관계자의 정책수요를 고려한 점이 있는가?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다문화 관련 정책의 평가지표는 정책내용별로 결과중심 또는 과정중심의 정책목표를 고려한 유형화에 따라 각각의 평가지표를 구성할 수 있다. 다문화 관련 정책의 경우 현행 특정평가제도상 명확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업무평가제도 상의 평가 또는 개별 위원회에 의한 평가라는 제도적 측면 보다는 다부처 관련 정책에 대한 바람직한 평가라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평가지표의 개선에 한정하여 논의하였다.

2.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평가지표 개발

1) 평가지표 도출을 위한 유형별 대표사례 선정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평가지표의 도출을 위한 심층분석 정책사례를 유형화하기 위하여 2011년도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추진 중인 외국인 정책과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의 목적을 국제결혼 건전화, 교육지원, 취업지원, 생활지원 정책으로 대별하고 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대하여 분류하였다.

다문화 정책의 경우 정책대상에 따른 유형화가 큰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외국인과 내국인으로 대상을 구분할 경우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다문화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극소수 정책만이 해당된다. 또한 결혼이민자와 다문화 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도 교육지원정책 외에는 대상별 구분의 의미가 크지 않다.

<표 6-1> 다문화 정책의 사례선정 기준

정책 목적	국제결혼 건전화 정책	교육지원 정책	취업지원 정책	생활지원 정책
유형	A	B	C	D

* 주: 다문화 정책의 주요 정책목적 가운데 추진체계 정비, 외국인력의 도입, 동포정책 및 이민정책은 정책사례가 많지 않고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평가지표 도출을 위한 정책사례에서는 제외하였음

이러한 4가지 유형별로 2011년도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경기도)의 다문화 정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2> 다문화 관련 정책사례의 유형별 추진 정책 현황

정책 유형	부처 및 지자체 추진 정책
A (국제결혼 건전화 정책)	국제결혼 중개제도 개선·국제결혼이민관 파견 등 건전한 국제결혼문화 조성 지원, 국제결혼 희망자 사전교육 실시, 예비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보제공(여성가족부), 건전한 국제결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안내프로그램 시행, 결혼이민자 입국후 생활실태 모니터링(법무부)
B (교육지원 정책)	취학전 유아의 기본학습능력 발달 교육지원,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도, 거점학교를 통한 한국어교육·학습 지원, 유치원비 지원, 부적응 자녀를 위한 대안학교 설립 지원(교육과 학기술부), 한국어교육 및 통·번역 지원, 언어영재교실 운영,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 등 언어발달 지원, 중도·동반입국 자녀 초기적응 프로그램 운영(여성가족부), 보육료 지원,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제공(보건복지부), 다문화교육 강사 확충(법무부),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보급(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경기도)
C (취업지원 정책)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고용촉진 지원금 연계, 사회적 기업(일자리) 육성(고용노동부), 결혼이민자의 자립모델 개발·보급, 결혼이민자 아동복지교사 채용 및 진로코디네이터 양성(여성가족부), 지방공무원 채용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결혼여성이민자 지도자양성 교육, 결혼이민자 정보화 교육(행정안전부),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맞춤형 영농교육(농림수산식품부),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지원(서울특별시), 결혼이민자 취업지원(경기도)
D (생활지원 정책)	기초생활 보호를 받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범위 확대, 부모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다문화아동보육료(보건복지부),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지원/아동양육 지원 확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여성가족부), 표준화된 사회통합프로그램 실시,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확대, 범죄피해 이주여성 지원체계 구축(법무부), 다문화가정 자녀 어울림 생활체육 활동 지원, 취약계층 외국인의 여가환경 개선(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다민족 보육시설 운영, 서울글로벌센터 설치·운영, 다문화빌리지센터 설치·운영(서울특별시),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수급권 확대(경기도)

이러한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평가지표의 도출을 위한 심층분석 정책사례는 네 가지 정책목적과 사업추진체계(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A유형은 국제결혼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건강한 다문화가족 형성을 지원하는 ‘건전한 국제결혼문화 조성 지원(여성가족부)’ 정책을, B유형은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중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경기도)’ 정책을 선정하였으며, C유형은 결혼이민자의 자립과 정착을 위한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고용노동부)’을, D유형은 정주 외국인의 사회정착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정책 가운데 ‘표준화된 사회통합프로그램 실시(법무부)’ 정책을 선정하였다.

<표 6-3> 심층분석 다문화 관련 정책사례의 선정

정책유형	정책사례 명
A	건전한 국제결혼문화 조성 지원(여성가족부)
B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경기도)
C	결혼이민자의 취업 지원(고용노동부)
D	표준화된 사회통합프로그램 실시(법무부)

2)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평가지표 설계를 위한 세부기준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의 유형별 대표사례에 대한 평가지표는 각 정책의 목표가 결과중심인지 과정중심인지에 따라 다르게 마련되어야 한다.

‘건전한 국제결혼문화 조성 지원’ 과 ‘다문화가정 방문 교육사업’ 및 ‘표준화된 사회통합프로그램 실시’ 의 경우는 주로 과정중심의 평가지표를 통한 정책평가가 적합하며,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정책의 경우에는 결과중심의 평가지표가 보다 적합하다.

<표 6-4> 다문화 관련 대표사례에 대한 유형별 평가지표 설계안

		정책내용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조성 지원	다문화가정 방문 교육사업	표준화된 사회통합 프로그램 실시	결혼이민자취업지원
정책목표	결과중심				✓
	과정중심	✓	✓	✓	

결과중심의 정책인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정책은 결혼이민자를 위한 일자리의 창출 및 취업을 위한 각종 지원서비스의 실시,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 실시 등을 통해 정책대상 집단의 취업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동 정책의 성과는 결혼이민자 취업자 수로 측정되는 산출결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 중심의 평가는 기본적으로 다소 엄격한 조건을 충족할 때 적절한 평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결과중심 평가는 정책 집행이 제대로 되었다는 것이 전제된 상태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의도했던 산출 혹은 성과의 수준과 질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성과지표가 목표와 결과간의 차이로 표현된다면 목표는 명확하게 정의되고 결과는 모호하지 않게 측정될 수 있어야 하며 측정도구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강문호 외, 2010). 따라서 결과중심 평가의 경우에도 산출과 연계되는 정책집행의 과정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는 결혼이민자 취업자 수라는 최종 성과목표를 중심으로 하되, 산출결과의 질적 평가 및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반영하고, 결혼이민자의 취업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세부사업에 대한 평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평가 세부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표 6-5> 결과중심 다문화 관련 정책의 평가지표 세부기준

- 결혼이민자 취업자 수
- 결혼이민자 취업의 질 (정규직, 계약직 등)
- 결혼이민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수 (인턴, 사회적일자리 등)
- 결혼이민자 DB 관리 실적
- 취업지원 인프라 확충 정도
-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 실시 횟수 및 내용
-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여부
- 기업의 사회공헌사업과 결혼이민자 취업과의 연계 정도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정책을 통한 파급효과
-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정도

과정중심의 정책평가는 프로그램에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즉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특성은 무엇인지, 프로그램 가운데 어떤 것이 작동하고

어떤 것이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다(노화준, 2006). 따라서 정책집행상의 효과성이나 기한 준수 등과 같은 단순한 과정에 한정하는 평가가 아니라 정책과정상에서 판단할 수 있는 하위 산출지표나 구체적인 정책수혜자 및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등에 대한 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과정중심 정책사례 중 하나인 ‘건전한 국제결혼문화 조성 지원’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지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6-6> 과정중심 다문화 관련 정책의 평가지표 세부기준

- 국제결혼문화 건전성을 위한 세부사업 선정의 적절성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요건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수 및 내용
- 관련부처와의 협력 강화 정도
-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불법행위 점검·단속 실적
- 주요 결혼상대국 주한대사와의 협의체·간담회 운영 실적 및 내용
- 국제결혼이민관 파견 수 및 활동 내용
- 결혼이민(예정)자 대상 현지교육 실적
- 결혼이민자 중 관련사업 수혜자 대상 만족도 조사

3.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모형 구성

앞서 논의한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기본 모형과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평가지표안을 감안하여 간략하게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모형을 구성해 보고자 한다.

먼저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모형은 결과중심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모형과 과정중심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모형의 2가지 유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현행 특정평가의 다부처 관련 과제 평가지표 체계에서 배점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평가모형을 제시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으나 정책결과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우와 정책과정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우를 대비시켜 보여주는 차원에서 두 평가모형의 지표체계를 다르게 구성하는 것이 정책활용도 측면에서 더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그 결과와 과정을 명확하게 분리하여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두 유형이 완전히 배타적

인 지표체계로 구성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일정 부분은 지표가 중복될 수 있으나 각각의 모형이 평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정보의 가치와 중요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배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지표체계를 구성하고자 한다.

먼저 결과중심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모형은 평가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보와 관련하여 정책과정보다는 정책성과에 중요성을 부여한다. 그리고 정책성과에서도 단순히 가시적인 성과목표치의 달성도보다는 정책의 영향력 및 파급효과 등 정책의 최종 효과에 보다 큰 정보가치를 부여한다. 따라서 다음에서 설명할 과정중심 평가모형과 달리 정책형성과 정책집행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정책과정으로 묶어서 이러한 영역에 대한 평가 비중을 축소하였다. 물론 결과중심 평가모형에서도 전체적인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구조화된 하위 정책목표가 구성되어야 하므로 정책목표의 적절성에 대해서 과정중심 평가모형과 같이 상당한 비중의 배점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통해 하위정책의 성과평가를 통한 전체적인 정책목표의 달성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정책추진 기반의 확보와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성 역시 최종 효과의 도출을 위해 중요하므로 이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성의 중요성을 과정중심 평가모형보다는 작게 반영하였다. 또한 평가결과의 환류는 평가결과가 프로그램에 다시 반영되어 이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결과중심과 과정중심 평가모형 모두 동일하게 포함시켰다.

<표 6-7> 결과중심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지표체계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정책과정 (30)	1. 정책목표의 적절성(15)	1-1. 상위 정책목표와의 연계·부합성(5)
		1-2. 정책목표 설정의 적극성(10)
	2. 정책추진 기반의 확보(5)	2-1. 자원 확보 및 배분의 적절성(5)
	3. 환경변화에대한 대응성(10)	3-1. 정책여건 및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성(5)
		3-2. 대국민 소통 홍보 노력(5)
정책성과 (60)	4. 목표달성도 (20)	4-1. 성과목표치의 달성도(20)
	5. 정책효과(40)	5-1. 영향력 및 파급효과(40)
평가결과 환류(10)		6-1. 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이행 정도(10)
합계 (100)		

과정중심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모형은 정책추진을 위한 투입과 산출에 있어서 효율성에 중점을 두며 또한 이해관계자의 정책수요에 대한 반응 등 추진과정에 보다 큰 가치를 부여한다. 따라서 정책형성과 집행의 비중이 정책성과에 비해 매우 크게 설계되었다. 특히, 정책대상 집단 및 이해관계자와의 관계가 집행에 있어서 중요하므로 추진과정의 적절성이 큰 비중으로 설계되었으며 정책성과의 경우 목표달성도와 함께 투입자원 대비 정책결과의 효율적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정책결과의 효율성을 포함시켰다.

<표 6-8> 과정중심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지표체계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정책형성 (25)	1. 정책목표의 적절성(15)	1-1. 상위 정책목표와의 연계·부합성(5)
		1-2. 정책목표 설정의 적극성(10)
	2. 계획수립의 충실성(5)	2-1. 정책내용의 타당성 및 계획의 체계성(5)
	3. 정책추진 기반의 확보(5)	3-1. 자원 확보 및 배분의 적절성(5)
정책집행 (35)	4. 추진과정의 적절성(20)	4-1. 추진계획의 진척도(10)
		4-2. 정책수혜자 및 유관기관·정책과의 협조 노력(10)
	5.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성(15)	5-1. 정책여건 및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성(10)
		5-2. 대국민 소통 홍보 노력(5)
정책성과 (30)	6. 정책결과의 효율성(10)	6-1. 투입자원 대비 정책결과의 효율적 달성도(10)
	7. 목표달성도 (20)	7-1. 성과목표치의 달성도(20)
평가결과 환류(10)		8-1. 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이행 정도(10)
합계 (100)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감사연구원. (2010). 일자리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감사방안: 연계사업 감사 프레임 워크를 이용한 성과분석. Executive Report(2010-05).
- 강근복. (2009). 정책분석 및 평가에서의 양적·질적 연구의 혼합.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9(4).
- 강문호·오영아. (2010). 과정평가의 평가요소와 질적 방법.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 강영철·박중훈. (2009). 효과적 정책관리를 위한 특정평가제도 및 방법론 개선방안.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강은숙. (2003). 평가제도와 각종 성과관리제도의 연계화 방안.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강은숙. (2007). 선진 주요국의 성과평가제도 고찰. 서울: 한국정책지식센터 정책&제도 DB.
- 공병천. (2007). 정부업무평가의 실태 및 주요 이슈: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구광모. (2003). 정책평가와 프로그램 평가의 비교: 우리나라 정부평가정책의 발전방향 모색을 중심으로. 중앙행정논집, 17(2).
- 국무조정실. (2005). 통합국정평가제도하의 자체평가역량 강화방안 연구.
- 국무총리실. (2010).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10-2012).
- 국무총리실. (2011a). 2011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 국무총리실. (2011b). 2011년 특정평가 세부 시행계획.
- 국무총리실. (2011c). 2011년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세부시행계획.
-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10). 2010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 권승. (2009).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과제: 담당공무원의 인식분석을 기반으로. 사회복지정책, 36(1).
- 김신. (2006). 주요국 성과평가시스템 비교연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김준한. (1999). 정책평가 개념의 재정립. 한국행정학보, 33(4).
- 김태원·김유리. (2011). 다문화가족정책을 통한 사회통합수준 분석: Castles and Miller의 모형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62.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남궁근. (2010). 정책분석평가와 윤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4).
- 노화준. (2006). 정부조직의 평가역량 구축 방안. 행정논총, 44(4).
- 노화준. (2008). 정책평가론: 프로그램성과와 정책혁신의 효과 평가. 서울: 법문사.
- 노화준. (2010). 사회의 재구성과 발전적 평가의 활용: 새마을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9(4).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2011).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2011년도 시행계획.
- 박병식. (2009). 다목적 사업 평가설계의 논리와 구성.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9(3).
- 박성혁·곽한영. (2009). 다문화교육정책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정책의 방향 모색. 시민교육연구, 41(2).
- 박진경. (2010).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의 선택적 적용. 한국정책학회보, 19(3).
- 법무부. (2011).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1년 9월호.
- 보건복지부. (2010). 2011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 (2010).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송근원. (2008). 정책분석 및 평가와 실증주의: 절반의 실패?.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8(2).
- 심보선. (2007). 온정주의 이주노동자 정책의 형성과 변화: 한국의 다문화 정책을 위한 시론적 분석. 담론201, 10(2).
- 양문승·윤경희. (2010). 이명박 정부의 다문화가정정책 추진성과 및 문제점: 경찰활동 관점에서의 평가. 한국공안행정학회보, 41.
- 오영균. (2008). 인적자원개발(HRD) 정책평가를 위한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적용.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외국인정책위원회. (2008).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외국인정책위원회. (2011).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08-2012: 2011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1, 2.
- 원숙연·박진경. (2009). 다문화사회와 외국인정책에 대한 정향성 분석: 중앙정부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7(3).
- 유금록. (2011). 재정자율평가제도 평가지표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1(1).
- 유용식·손호중. (2009). 다문화사회 대응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6(2).
- 윤계형. (2010). 일본의 공공정책·입법평가의 현상과 과제. 입법평가연구, 2.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원문: 手塚貴大.(2009). 手塚貴大. 行財政改革・政策評価・政策評価行政法 - 政策評価法等を素材とした公共政策・立法評価の現状と課題-. 広鳥法学 33卷 2号]
- 윤수재·이광희·홍재환. (2008).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해외사례 비교분석: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이광희·홍재환·강영철. (2007). 통합국정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특정평가 개선방안, 정성적 지표 평가방안, 고객만족도 조사모델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이상윤. (2009). 일본 정책평가제도의 입법평가적 기능. 입법평가연구, 1.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 이석민. (2010). 사회서비스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이론주도 평가모형의 적용에 관한 연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9(3).
- 이윤식 외. (2004). 외국 평가실태조사 보고서: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한국정책학회.
- 이윤식·제갈돈·김주환·김홍률·심광호·윤기석·박재신. (2006). 정부성과관리와 평가제도: 주요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대영문화사.
- 이혜승·김난영. (2011).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성과평가. 감사연구원.
- 임정빈·최웅선. (2011).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성과와 반성 그리고 발전방향. 제2회 이민정책포럼: 사회통합을 위한 이민유형별 정책설계 자료집.

- 장교식. (2003). 정부업무의 평가체계 관련법제 정비 방안.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 장교식. (2008). 일본의 정책평가와 그 절차. 입법동향과 입법평가, 2008년 겨울호.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 장지인. (2007). 정부기관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실태 및 성과 연구. 서울: 행정자치부.
- 전은주. (2009). 국어교육정책의 방향: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언어교육정책의 현황과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36.
- 정정길·성규탁·이장·이윤식. (2004). 정책평가: 이론과 적용. 서울: 법영사.
- 차의환. (2007). 정책평가의 이론과 실제: 통합국정평가제도의 추진전략. 서울: 한올아카데미.
- 최영출. (2011). 논리모형(Logic Model)의 성과관리 적용 가능성: 사회적 기업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1(3).
- 허만형·라휘문·차용진. (2009). 정부업무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정책학회 추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호진원. (2007). 정보화사업 평가를 위한 이론적 모델 및 통합지표의 타당성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홍기원. (2009). 한국 다문화정책의 현황과 과제. 다문화와 평화, 3(1).
- 홍재환·윤수재·공병천·윤기석. (2005). 정책평가제도에 대한 외국사례 연구: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홍재환·함종석. (2007). 한국과 일본의 정책평가제도 변천과정 비교 분석.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국외문헌〉

- 總務省. (2009). 配偶者からの暴行力の防止等に関する政策評価. 評価結果及び勧告. 報道資料.
- 總務省. (2011a). 政策評価等の実施{状況及びこれらの結果の政策への反映状況に関する報告.
- 總務省. (2011b). バイオマスの利活用に関する政策評価. 評価結果及び勧告, 報道資料.
- DoF. (2007). *Departmental Performance Report*.

- Inglis, Chrisine. (1996). *Multiculturalism: New Policy responses to Diversity*, MOST Policy Paper 4. UNESCO.
- Kymlicka, Will. (1995). *Multiculturalism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abbe, D. (2006). *Valuing the Evaluation Function: Problems and Perspectives*, in TBS(<http://www.tbs-sct.gc.ca>).
- NAO. (2001). *Joining Up to improve public services*.
- PricewaterhouseCoopers LLP & Interis Consulting Inc. (2009). *Five-Year Evaluation of the MAF*.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 Stufflebeam, Daniel L. (2004). *Evaluation Design Checklist*. Western Michigan University. <http://www.wmich.edu/evalctr/checklists/evaldesign.pdf>.
-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2010). *Canada's Performance: The government of Canada's contribution 2009-2010*.
- UNPAN. (2002). *Working Together - Integrated Governance*.

〈Web site〉

일본 총무성 <http://www.soumu.go.jp>

정부업무평가위원회 <http://www.psec.go.kr>

캐나다 재무위원회 사무처 <http://www.tbs-sct.gc.ca>

캐나다 추밀원 <http://www.pco-bcp.gc.ca>

MEMO

MEMO

MEMO